

##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5의2 및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6. 02

홍 천 군



1.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 : 허가조건 미이행
3.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 27조
4. 처분대상

연 번	당사자		허가내용				허가목적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치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1	(주)현대 경매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1509(역삼동, 성지하이츠 3차빌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078	전	191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취소	
			1078번지외 1필지	1079	전	111			

###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5. 06. 26(금) 10:00~16:00

나) 청문장소 :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6. 공고기간 : 2015. 04. 02 ~ 2015. 04. 16 (14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군보,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종합민원실(☎033-430-2270, FAX 033-430-2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홍천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심판청구서는 홍천군수 또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가능함),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및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허가 위치	
4. 허가 목적	
5.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li>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li>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ol>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사천시청 도시과 ☎831-3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